

#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2023. 1. .

국 토 교 통 부  
(녹색도시과)

##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

### 규정 일부개정안

#### 1. 개정이유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심사 절차 완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미반영시설을 추가하고,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협의 요청 기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추가
  - 1) 묘지공원 및 장사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(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함)(안 별표2 제1호라목 및 제3호아목)
  - 2)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, 국가 지원지방도, 광역도로(안 별표2 제2호나목)
  - 3) 기존 국방·군사시설 중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(미리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경우에 한함) (안 별표2 제4호라목)
  - 4) 교정시설 내 수용자시설(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함)(안 별표2 제4호자목)

2 제6호)

국토교통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·도지사는 설치  
주체(사업시행자)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  
내(보완 기간은 제외)에 국토교통부에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함

**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 
규정 일부개정안**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 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묘지공원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  
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위치·규모 등에 관하여  
미리 국토교통부 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)

별표 2 제2호나목 중 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”를  
“고속국도와 일반국도,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, 국가지원지방도, 광역도  
로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장사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  
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위치·규모 등에 관하여  
미리 국토교통부 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)

별표 2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별표2 같은 호 자목을 다음  
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국방·군사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)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## 경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중축

2)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

3)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

자. 교정시설 내 설치하는 수용자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한다)

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·도지사는 설치주체(사업시행자)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의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〈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개정 전후 비교〉

여야 한다.)	-----.		<u>중 국토교통부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·도지사는 설치주체(사업시행자)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의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</u>
다. ~ 아. (생 략)	다. ~ 아. (현행과 같음)	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	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		
< 신 설 >	<u>아. 장사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위치 ·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)</u>	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라. 국방 · 군사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한다) 및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	<u>라. 국방 · 군사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1)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 2)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 3)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		
마. ~ 아. (생 략)	마. ~ 아. (현행과 같음)		
< 신 설 >	<u>자. 교정시설 내 설치하는 수용자시설 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한다)</u>	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		
< 신 설 >	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한 시설		